

건설안전 현황 및 정책동향과 대응

2025. 8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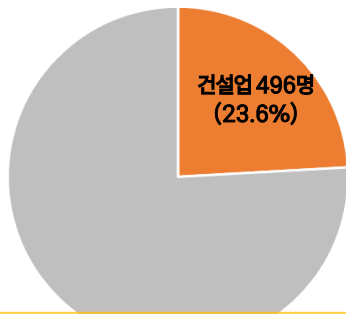
- 01 건설안전 현황과 건설사고의 특성
- 02 건설안전 제도와 정책
- 03 정부 중대재해 근절 대책(33차 국무회의)
- 04 대응 방안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전체 산업의 39.7% 차지

- (사망자) 2024년 기준, 쏘산업 2,098명 중 건설산업 496명으로 **23.6% 차지**
- (사고사망자) 쏘산업 827명 중 건설산업 328명으로 **39.7% 차지**
- (건설산업 사망자) 사망자 496명 중 328명이 사고사망자로 **66.1% 차지**
- (사고사망인율) 건설산업은 1.57‰로 산업 평균인 0.39‰의 **약 4배**

24년 쏘산업 사망자

〈N=2,0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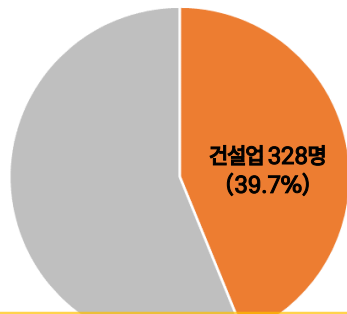


건설업 사망비율 23.6%

Source: 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현황

24년 쏘산업 사고사망자

〈N=8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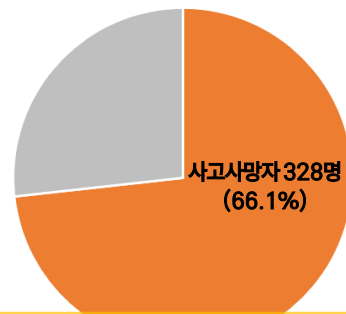


건설업 사고사망비율 39.7%

Source: 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현황

24년 건설산업 사망자

〈N=4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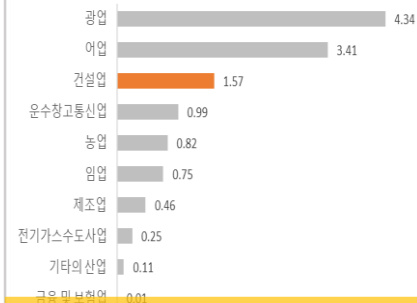


건설업, 사고로 인한 사망 많은 특징

Source: 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현황

24년 산업별 사고사망만인율

〈산업평균 = 0.39 ‰〉



건설업 산업평균보다 약 4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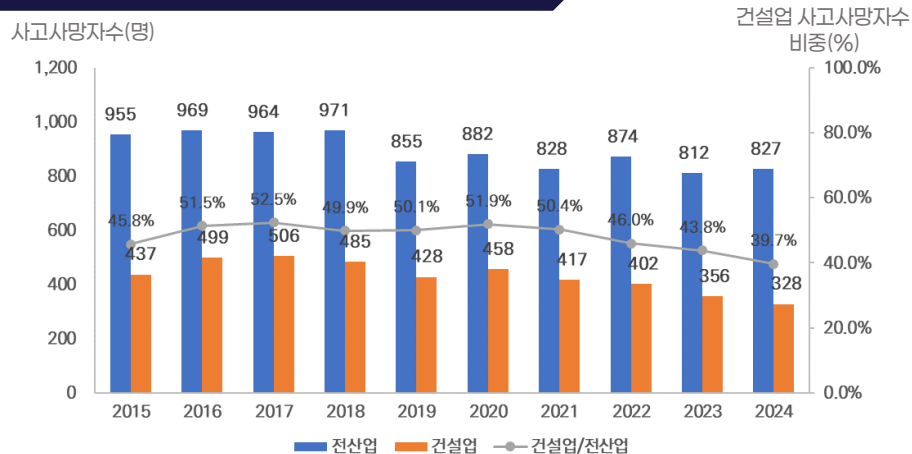
Source: 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현황

(연도별 비교)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최근 10년간 최저

■ '24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328명)와 비중(39.7%) 최근 10년 최저, but 근로자 수도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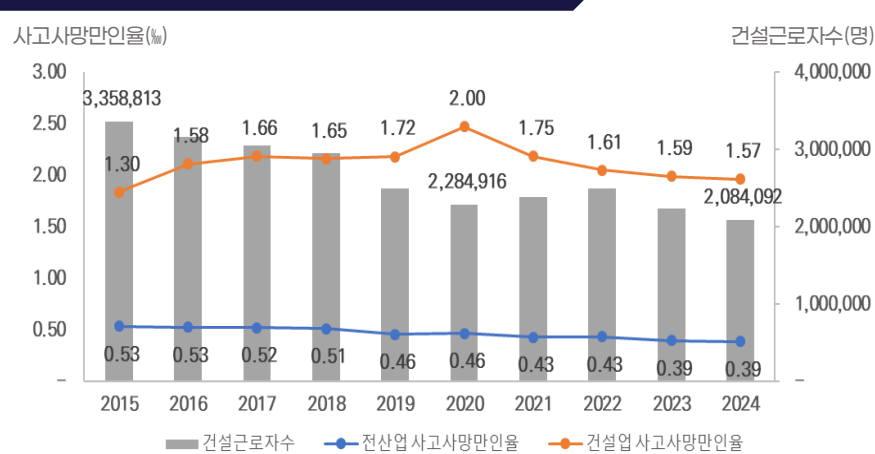
- (사고사망자 수) 23년 최초 3백명대 진입, 506명(2017) → **328명**(2023)으로 178명 감소
- (사고사망자 비중) 16년~21년 쉐산업 사고사망자 수의 50% 이상 기록, 52.5%(2017) → **39.7%**(2024)
- (건설근로자 수) 2.1백만명으로 최저, 3.3백만명(2015) → **2.1백만명**(2023)으로 약 1.2백만명 감소
- (사고사망만인율) 20년 이후 감소 추세, 최근 10년간 2번째로 낮은 수치

최근 10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변화 추이



Source :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현황분석

최근 10년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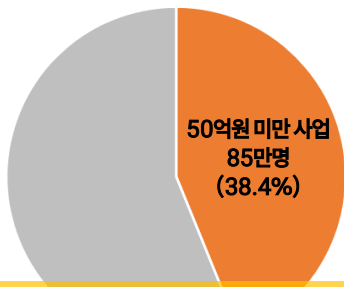
Source :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현황분석

■ '23년 기준 50억 미만 건설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비중 70%, 사업장 수 약 90%

- (근로자 수) 223만명 중 50억 미만 건설사업장 근로자 85만명(38.4%)
- (사고사망자 수) 356명 중 50억 미만 건설사업장 사고사망자 224명(68.5%)
- (사고사망만인율) 50억 미만 건설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2.85‰로 50억 이상 사업장(0.82‰)의 약 3.5배
- (사업장 수) 32만 개소 중 50억 미만 건설사업장 약 29만 개소(89.8%) 전국에 산재 →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 관리 한계

공사규모별 근로자 수

<N=223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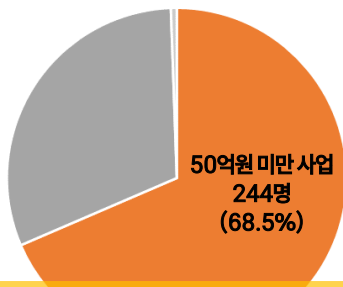


50억 미만, 근로자 수 비율 38.4%

Source: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현황분석

공사규모별 사고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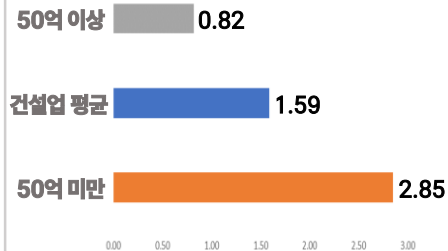
<N=356명>



사고사망자 수 비율 68.5%

Source: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현황분석

공사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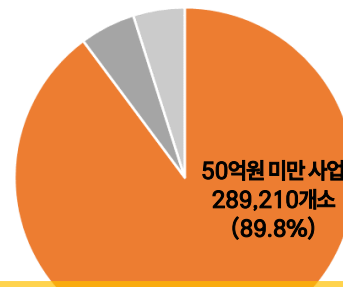


50억 이상 사업의 약 3.5배

Source: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현황분석

공사규모별 사업장 수

<N=321,949개소>



사업장 수 비율 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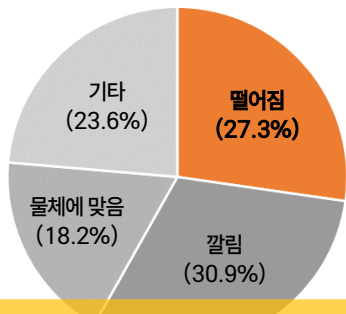
Source: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현황분석

■ 50억 미만 민간 건설사업장,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 (2020~2022) 비중 70% 이상

- (3년간 2020~2022 사고사망자 발생형태) 725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 365명(50.3%), 깔림 135명(18.6%) 순
- (공공 vs. 민간) 공공사업 떨어짐 사망자 30.7% < 민간사업 떨어짐 사망자 59.4%
- (50억 미만 민간 떨어짐 사망자 228명) 3년간 2020~2022 건설업 사고사망자 725명의 31.4%, 건설업 떨어짐 사망자 365명의 62.5%, 50억 미만 민간사업 사고사망자의 72.2%

50억 이상 공공사업

<N=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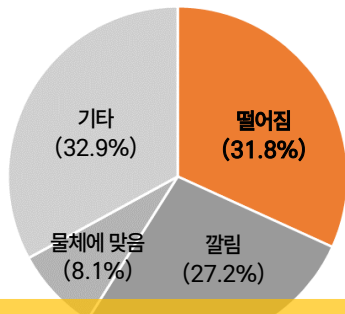


깔림(30.9%) > 떨어짐(27.3%)

Source: 국토교통부, 2020~2022 CSI

50억 미만 공공사업

<N=17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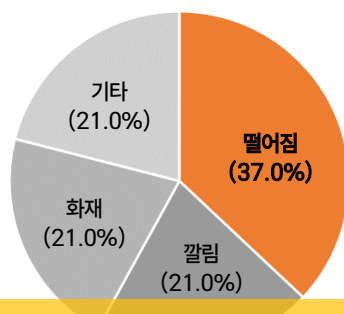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 비율 30%대 수준

Source: 국토교통부, 2020~2022 CSI

50억 이상 민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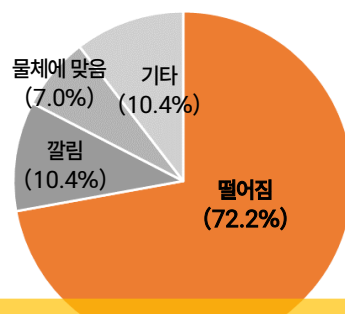
<N=181명>



Source: 국토교통부, 2020~2022 CSI

50억 미만 민간사업

<N=3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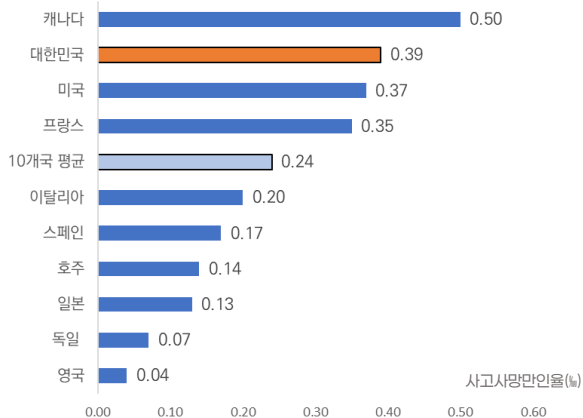
떨어짐 사망자 72.2%

Source: 국토교통부, 2020~2022 CSI

■ '23년 기준 전체산업과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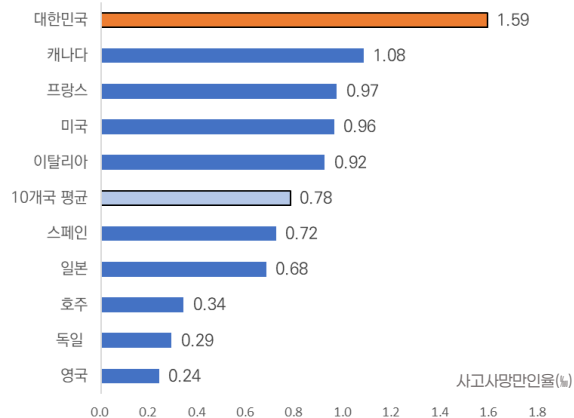
- (전체산업) OECD 경제 10대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10개국 평균의 1.6배·영국의 9.7배 수준
- (건설산업) 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으며, 10개국 평균의 2.0배·영국의 6.6배 수준
- (건설산업/전체산업) 10개국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산업보다 ↑, 평균 3.2배 → 타 산업보다 위험한 산업
- (자료) 영국·독일·호주·스페인·이탈리아·미국·대한민국·일본(2023), 프랑스·캐나다(2022)

10개국 전체산업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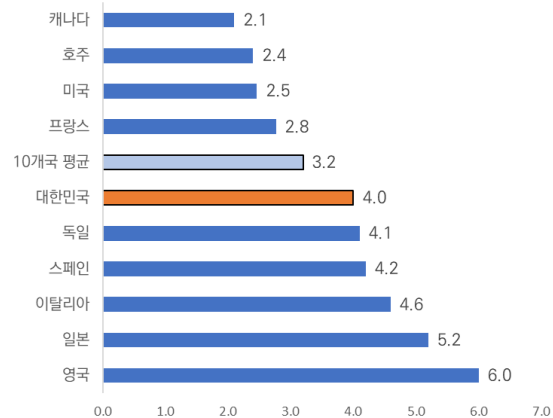
Source: ILO Statistics

10개국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Source: Source: ILO Statistics

건설산업/전체산업 사고사망만인율



목차

01

건설안전 현황과 건설사고의 특성

02

건설안전 제도와 정책

03

정부 중대재해 근절 대책(33차 국무회의)

04

대응 방안

■ 건설안전 책임이 사업주→도급인→발주자→기업대표, 국무회의(7.29) 이후 강력한 규제 예상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업장 단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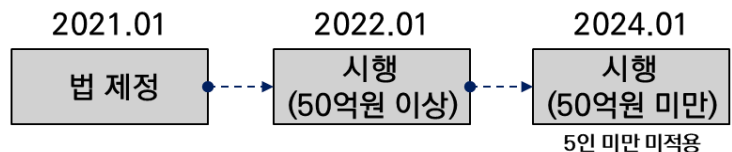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목적 |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 | 사업장 내부 공사목적물 안전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확보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의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
| 적용 | 해당 사업장 | | 기업 |
| 주요 의무 주체 | 개인사업자 | 사업주 | |
| | 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 |
| 주요 의무 | 구체적으로 명시 (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개 조항) | 구체적으로 명시 (예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87개 조항) | 포괄적으로 명시 (법 16개 조항, 시행령 15개 조항으로 구성) |
| 안전관리비용 계상 의무 | 발주자 | | 기업 |
|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기업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저감하려는 취지



법의 목적이 아닌 방법론에 대한 의견 차이

- 법의 목적, 모든 이해관계자 동의
 -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근로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는 이 법의 목적에는 모두 동의
- 예방 방법, 특정 집단에 대한 처벌 강화에 이견
 - 이 법에서 제시하는 중대재해 예방 방법은 특정 그룹에 대한 처벌강화가 유일
- 법의 목적이 아닌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 기업 및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강하게 처벌하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범죄성립은 가장 쉽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높아

| 구 분 | | 대한민국 | 영국 | 호주 |
|------------|------|----------------------------|--|------------------------------|
| 관련법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8개 주 중 4개 주의 형법 및 산안법(연방법 X) |
| 형 태 | | 개별법 | | 형법 및 산안법에 포함 |
| 제정일 | | 2020년 | 2007년 | 2004년, 2017년, 2019년 |
| 범죄 성립조건 | 재해형태 | 중대재해 (사망 + 일정 규모 이상 재해) | 사망사고 | |
| | 과실수준 | 과실 | 중과실 | |
| 처벌대상 | | 개인 및 법인 | 법인 | 개인 및 법인 |
| 개인 처벌의 하한형 | | 1년 이상 | 無(개인에 대한 처벌 X) | 無(상한형만 명시) |
| 손해배상 | | 손해액의 5배 이내 | 無 | 無 |

■ (목적)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 부여와 주체별 책임 소재 명확화

- (건설공사 참여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하수급시공사 포함), 감리자, 안전자문사, 건설종사자 등
- (참여자의 기본 의무) 위험성 제거, 근원적 대처, 안전 우선 고려,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정보 제공 등 안전사고 예방 원칙 준수

건설공사 참여자별 의무사항

| 구분 | 주체 | 주요내용 |
|----|----------------|--|
| 의무 | 발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기간 및 비용 산정, 검토, 제공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사는 인허가 기관장이 적정성 검토 • 설계,시공,감리자 선정시 안전관리 역량 확인 • 안전자문사 선임 근거 마련 |
| | 설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작성시 안전고려 공사기간과 비용 산정 |
| | 시공사 (원수급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전 설계도서, 공기, 비용, 안전시설물 등 적합성 검토 • 하수급인에 공사 위험요인 정보제공 및 안전역량 확인 •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2명 이상 시공사 동시 작업시 해당 작업 조정 • 소속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은 발주자와 50%부담) •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출,이행 |
| | 시공사 (하수급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급인 지시 준수, 공사기간과 비용 적정성 검토 • 소속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은 발주자와 50% 부담) |
| | 감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검토 • 시공계획서 안전관리 적정성 검토와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필요시 공사중지 명령 |
| | 건설종사자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규칙 준수, 시공자의 시정조치 불응시 작업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준수시 과실비율에 따라 근로재해보험금 감액 |

■ (벌칙) 업종·분야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or 1년 이하 영업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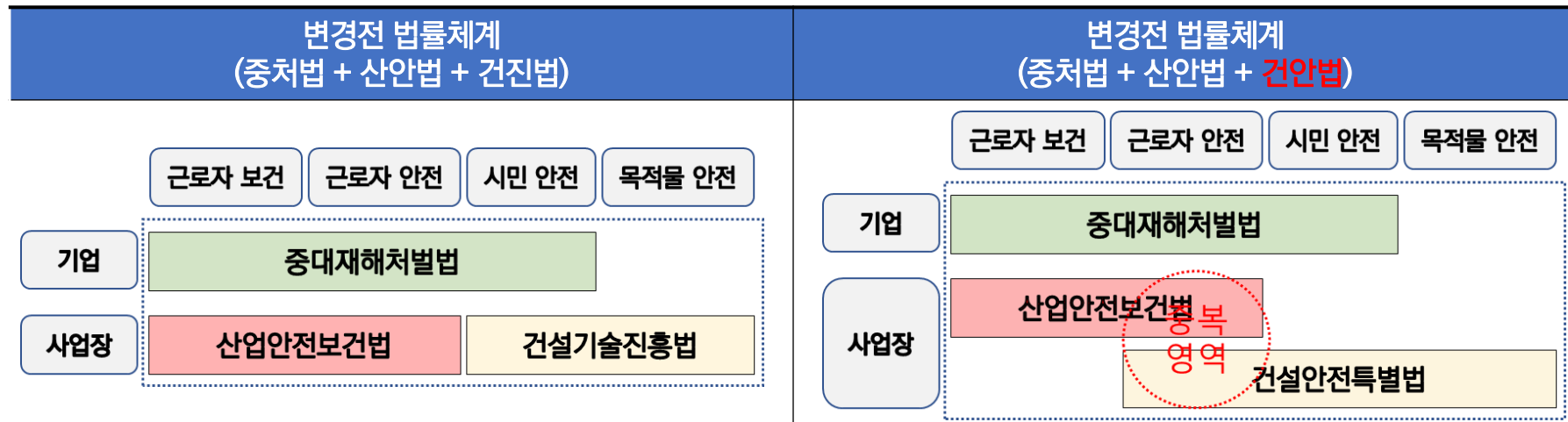
- (참여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 등
- (시공자) 안전관리의무 위반 or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사망자 발생시 등

39조(벌칙)의 주요 내용

| 주체 | 위반 내용 | 징역/벌금 | 영업정지/과징금 | 과태료 |
|--------|--|-------|----------|-----|
| 발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안전관리비를 산정·지불하지 않은 경우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착공 지시 및 묵인한 경우 | | | ◎ |
| 설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의무(예정 공사기간 및 비용 산정, 안전 정보 제공 등)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시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의무(설계도서 검토,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등)를 위반하거나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을 어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 •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하수급시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의 안전관리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감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의무(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서 승인, 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등)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진법)공사목적물+시민안전 → (건안법)공사목적물+시민안전+근로자 안전
 - (중복규제 발생 가능) 산안법 근로자 안전과 건안법 근로자 안전은 중복규제 가능성 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전후 건설안전 법률체계 비교



목차

01

건설안전 현황과 건설사고의 특성

02

건설안전 제도와 정책

03

정부 중대재해 근절 대책(33차 국무회의)

04

대응 방안



"가용인력·자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JT TV NEWS
구독

■ (경고 메시지)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 표명, 안전관리 소홀 기업 강력 비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현장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동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 노동부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지시
- (재발 방지 대책) 상습적 사망사고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공공입찰 제한, 공시 의무 강화 등 경제적 제재 방안 검토

■ (논의된 주요 대책)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부처별 다양한 방안 논의

- (고용부) 처벌유형 다양화(징벌적 손해배상,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등), 불법하도급 근절, 실질적 책임자에게 처벌
- (법무부) 중처법 양형 기준 마련 요청, 중처법을 예방법으로 법제명 변경, 위반시 처벌 강화
- (국토부) 건설안전특법 제정 추진(국회와 협력)
- (금융위) ESG 평가 중 중대재해 감점 강화 및 대출제한 등 검토, 안전투자 확대 기업에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
- (공정위) 원청의 안전관리비용 하청 전가 행위 집중 조사·엄정제재
- (기재부) 고용부 협의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에 중처법 위반 추가 계획
- (행안부) 경찰청에서 산재 전담 수사 인력 확보, 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우수기업 지정·관리

목차

01

건설안전 현황과 건설사고의 특성

02

건설안전 제도와 정책

03

정부 중대재해 근절 대책(33차 국무회의)

04

대응 방안

■ 건설산업 현황

- 시장침체, 수익성 악화, 생산성 저하, 고령화 등 문제는 국민 삶과 국가경제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
- 고착화된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 인력 유입 기피는 만성적 문제
- 건설안전 및 품질 문제는 국가 이슈로 부각
- AI, 디지털 전환, OSC, ESG 등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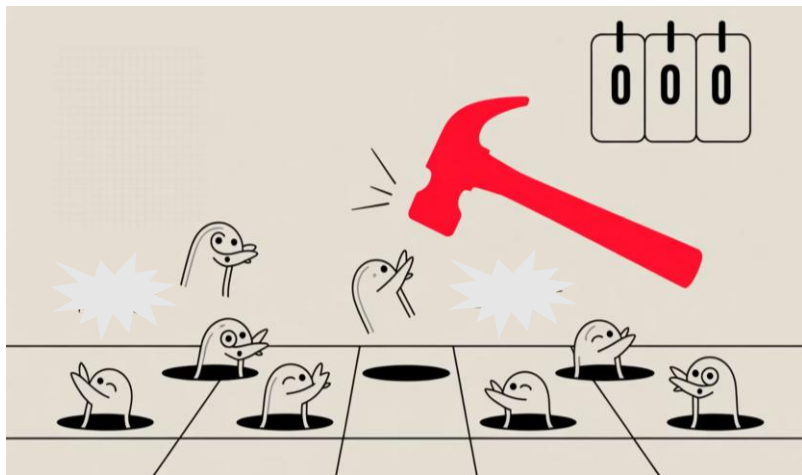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방향

- 전방위적 안전 규제 강화, 하도급 규제, 노란봉투법, 적정임금제 등 고강도 정책 예고
- 개별 현안 대응 중심보다는 근본적 해법 강구 필요

■ 대응 현황

- (대건협) 지역별 간담회(현안 82건), 10대 과제 추진, 지역별 맞춤형 현안 사항 등 활동
- (연구원) 정책 협의 등 다변화된 역할 요구 증대(국회 입법 지원 11건, 세미나 발제 33건 등)

하나 현안을 누르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건설산업은
정교한 설계 없이 진행되는 “두더지 잡기 게임” 중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변혁이 불가피

⇒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 본사 차원의 역할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침 수립
- (안전 전담 조직·전문가 배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감독
- (예산 및 자원 확보) 안전시설, 보호장구, 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여 현장의 안전 투자 독려
- (협력업체 관리 강화)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만 계약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표준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 현장에 적용

■ 현장 차원의 역할

-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시) 모든 근로자가 작업 투입 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 대비한 훈련 진행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작업 종류에 맞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의 착용 수시 확인
-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 방법 개선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시행
-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응급처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숙련도 제고

감사합니다